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74
----------	-------

발의연월일 : 2021. 9. 8.

발 의 자 : 곽상도 · 태영호 · 이채익
송언석 · 김태호 · 한기호
구자근 · 金炳旭 · 임이자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한 상황임. 또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77.1%)’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2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를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축소한 경우”를 “축소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신설·증설하는 것
제7조제2항제2호 중 “양도 또는 축소”를 “양도·축소(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업”을 각각 “기업(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양도 또는 축소”를 “양도·축소(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국내복기귀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① 국내복귀 기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周)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특례에 관한 유효기간)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 ----- <u>것</u> <u>을 말한다.</u>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 양도 또는 <u>축소</u> 한 경우	가. ----- ----- <u>축소</u> <u>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 증설하는 것</u>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	나. ----- -----

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신 설>

4. (생 략)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
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
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
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
설·증설하는 것

다.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
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
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
을 국내(「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
정한다)에 신설·증설하는
것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
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
서

3.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
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
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
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

-----.

1. (현행과 같음)

2. -----양도·축
소(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
는 기업에 한정한다)-----
--

3.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기업(제2조제
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3. -----

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
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
장을 축소할 것

4. (생략)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
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
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
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기업(제2조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
다)-----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양도·축소(제2조제3
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
한다)-----

-----.

제17조의2(국내복귀기업 근로자
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①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사용자
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
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周) 12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
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

	<u>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u> <u>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u> <u>주어야 한다.</u>
--	--